

수원지방법원 2022. 5. 24 선고 2021가단53261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13. M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

담당변호사 김영석

피고N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숙

변론 종결2022. 5. 3.

판결 선고2022. 5. 24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주식회사 O, P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1/674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5/187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각 2020. 3. 13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주식회사 O, P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1/674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5/187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20. 3. 13. 접수 제52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Q 일원에 'R'이라는 이름의 전원주택 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 한다)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(이하 'O'이라 한다)과 P으로부터 위 전원주택 용지를 분양받고, 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. 그러나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들은 O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의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. 이와 같이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려고 하자 O과 P은 위 가압류를 피하고자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(이하 '이 사건 가등기'라 한다). 결국 이 사건 가등기 설정 행위는 원고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O과 P의 무자력을 심화시키는 행위이므로

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본안 전 항변의 요지

원고들은 2020. 5. 20.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고, 주식회사 R을 설립한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까지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. 6. 26.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, 이 사건 소는 1년의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나. 이 법원의 판단

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이 설립하였다는 주식회사 R은 2020. 5. 20.이 아닌 2020. 6. 1.에 설립되었고, 이 사건 소는 2021. 6. 26.이 아닌 2021. 5. 26.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, 주식회사 R 설립 이후 1년이 초과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.

나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,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5. 6. 9.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결국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관한 판단

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,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들이 O과 P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상의 전원주택용지를 분양받고, 공사도급계약을

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, 위 각 계약에 기한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. 원고들 주장에 따르면,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비의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뿐이고, 그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금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가사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, 그 시기상 선후관계에 비추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가등기 설정 행위 당시 이미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.

결국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최환영

별지